

[별표 1]

교육과정별 입교 및 수료행사 운영기준(제16조 관련)

1. 입교 및 수료행사

가. 2주 이상 교육과정 : 입교 및 수료행사 시행

- 대상 과정 : 교육기간 2주 이상의 기본교육·전문교육 및 외국어교육과정 등
- 기준·절차

구분	입교식	수료식
공통	개식	
공통	국민의례 · 국기에 대한 경례(경례곡·맹세문 포함) · 애국가 제창 ·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	
수료행사		수료증 수여 · 원장이 교육생 대표에게 수료증 수여 · 교육생 상호 수료증 전달 ※ 수료자가 소수인 경우 개인별로 수여 가능 시상 (성적우수자, 공로자 등)
공통	입교사	수료사
입교행사	역량개발원내 간부 및 교수 소개	
공통	폐식	

나. 2주 미만 교육과정 : 입교식 및 수료행사 생략

- <삭제>
- <삭제>
- 다만, 입교 및 수료행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호를 준용하거나 교육과정 특성에 맞춰 간략히 시행할 수 있다.
<표 삭제>

2. 예외규정

- 입교·수료와 관련하여 위에 규정되지 않거나 위에 규정된 사항의 적용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여 시행
- 외국공무원교육과정 : 해당 국가의 의례 등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별도 기준 마련·시행

3. <삭제>

4. <삭제>